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1. 29.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2023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 명단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등급이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23년 평가 주기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업체만 포함하고 있으며, 붙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명단 및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정책자료>사전정보 공표목록>공포내용: 업자명, 등록관서, 등록일자, 소재지, 전화번호등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3년 석면 안전성평가 결과 1부.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101146

2023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 명단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등급이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23년 평가 주기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업체만 포함하고 있으며, 붙임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명단 및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정책자료>사전정보 공표목록>공포내용: 업자명, 등록관서, 등록일자, 소재지, 전화번호등 > 석면해체, 제거업자 등록현황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3년 석면 안전성평가 결과 1부.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101146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97

[참고]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긴급 점검

- 1월 23일,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1월 23일(화)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북극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고,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한파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1월 24일(수)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은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핫팩,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합니다.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vs/report/enevsView.do?news_seq=16116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vs/report/enevsView.do?news_seq=16107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 사망, 한파가 와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1.24. 제2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1월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3대 사고유형과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6117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 지원 당부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1월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6127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현장에서는 83만 7천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가지 전제조건인 ①정부의 사과, ②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제단체도 ③2년 후에는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6130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6131

(참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 명동 음식점 찾아 재해예방 역량 강화 지원 약속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조업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월)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순회하면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과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법 적용이 시작된 1월 27일(토), 28(일) 주말 동안 각자 발로 뛰며 거주지 인근 업체에 방문하여 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5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 시행일: 2024년 1월 27일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101553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1/15, 울산 남구] 배관 내부 청소 작업 중 피그볼이 맹판을 충격하여 맹판에 맞음
- [1/16, 인천 서구] 톤백을 집게차에 걸던 중 집게에 맞음
- [1/5, 경기 화성시] 철골 조립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5m)
- [1/18, 경남 거제시] 용접 작업을 위해 선박 내부 계단 이동 중 굴러떨어짐
- [1/22, 경기 평택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사다리모 이 동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서 떨어짐
- [1/23, 경남 김해시] 원재료 톤백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 중 로프가 파단되며 톤백에 깔림
- [1/24, 경남 거제시] 선박 하부 수중 작업 중 의식 잃은채로 발견
- [1/24, 전북 군산시] H형강 위치 조정 중 쇠지렛대가 튕기 며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떨어짐
- [1/24, 전남 곡성] 압력여과기 테스트 중 유압실린더가 폭 발하여 커버에 맞음
- [1/23, 서울 종로구] 굴착기 버킷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 짐
- [1/12, 부산 동래구]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 자재에 맞은 후 떨어짐(높이 10m)
- [1/14, 부산 강서구] 화물선 훗줄 해체 작업 중 바다에 빠짐
- [1/12, 경남 거제시] 선박 블록 외판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기관 공모 및 설명회 개최 알림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 간기관은 붙임의 공고문(안전, 화학, 건설, 서비스, 보건)을 참조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은 산업 안전보건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업임을 알 려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24.1.23.(화)~1.24.(수)]하오니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 술지원사업(위탁) 참여 희망 기관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접수기간 : ’24. 1. 31.(수) 09:00 ~ 2. 14.(수) 17:00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6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우수모델을 발굴·확산 하는「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첨 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69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72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73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실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81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4년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 선정 결과

2024년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7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2024년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24년도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모니터링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1. 26.(금)~ 2. 5.(월) 18: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착기준)

- 신청자격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8조 및 제1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 ※ 상기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석면조사기관은 사업 참여 제한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782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국제암연구소(IARC), 과불화화합물을 group 1 으로 개정하다

과불화화합물 그룹1으로 개정

국제암연구소에서 2023년 12월 1일 과불화화합물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에 대해서 발암성 분류 그룹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출판 될 IARC monograph Volume 135에 수록되게 됩니다. 과불화화합물은 forever chemical이라고도 불리며 자연계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고분자 형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오이레터에서도 다루어진 적 있습니다 ([영화속 환경건강 이야기: 다크워터스](#)).

과불화옥탄산: Perfluorooctanoic acid (PFOA)
과불화옥탄술폰산: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PFOA는 기존에 그룹2B였다가 이번에 그룹1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PFOS는 이번에 새롭게 그룹2B로 지정되었습니다. 암발생 부위별로 분류해보았을 때, PFOA는 **신장암(renal cell cancer)와 고환암(testicular cancer)**에서 제한적 근거(limited evidence in human)를 가집니다. PFOS는 그룹2B가 되었고, 암발생부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11개 국가에서 모인 30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2023년 11월 7일부터 14일간 프랑스 리옹에 모여 회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룹1 재개정의 근거

PFOA는 동물실험에서의 충분한 근거(sufficient evidence)를, 노출된 인간에서 강력한 발암기전상 근거(epigenetic alterations and immunosuppression)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노출되었을 때 제한된 근거로 신장암과 고환암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었으며, 인간원시세포(human primary cell)와 실험시스템에서 강력한 기전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PFOS는 실험시스템에서 강력한 기전적 증거(epigenetic alterations and immunosuppression)를 보였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제한된 근거(limited evidence)를 보였으며, 사람에게서 근거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56/>

노동자 참여없는 자기규율은 어불성설

얼마 전 건설노동조합과 정당에서 주최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노조탄압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폭염기에 휴게소 설치를 요구했던 노동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기사가 나간 사흘 후에 해고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불안정하게 포허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CPB, concrete placing boom)을 도입하도록 현장 관리자들과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설득해 협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며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당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건설현장에 유독성 자재가 방치되었다고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위험한 작업 거부하면 면허 정지 시킨다'는 국토부](#)
[\[기사\] 건설현장 휴게소 설치 요구했더니 해고, 안전신고 하니 경찰수사](#)

로벤스 보고서, 자기규율의 주체는 기업과 노동자

현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안전보건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규율'이라는 개념은 1972년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self-regulation'을 말합니다. 로벤스 보고서는 영국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안전보건 정책철학의 지침서라고 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57/>